



전북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시행 2024. 1. 18.] [훈령 제292호, 2023. 11. 10., 타법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과), 063-239-355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란 각급학교에서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1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사회적 배려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과 자녀 등 학교장이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통학불편 등의 사유로 원거리통학자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학교) 이 규정의 적용대상 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립·사립학교로서 제2조제2호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기숙사 운영 연간계획 수립) 기숙사 운영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 학생 자치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은 7명~15명의 범위에서 기숙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교직원 위원 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제2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체 위원수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숙사 운영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회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두어야 한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 회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자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제9조의 기숙사 운영규정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별도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원거리통학자(통학불편자) 등을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인원의 아래 비율만큼은 우선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부 입사학생은 전체 입사인원에서 차감하고 산출한다.

1. 전주·군산·익산지역 일반고등학교(일반계열) : 입사인원의 20%
2. 그 밖의 고등학교 : 입사인원의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선발비율에 미달하거나,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권 및 수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에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경쟁적 교육 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업성적 차別に 따른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자치회 심의를 거친 규범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기르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청결지도와 안전·재난 사고예방 사전교육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숙사 운영규정 제정) ① 학교장은 기숙사가 민주적·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운영위원회, 자치회)의 구성·운영, 학생 선발기준, 기숙사비 징수·반환기준 및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장은 기숙사 구성원(학생·사감 등)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인권 우호적인 운영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

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